

## 육아휴직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

지원대상	육아휴직 급여	▶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▶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
	육아기 단축급여	▶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▶ 단축 후의 주당 근로시간이 15~35시간인 근로자

지원요건	▶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·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<b>30일 이상 부여받은</b> 근로자 ▶ 피보험단위기간 <b>180일 이상</b> ▶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<b>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</b> 에 신청
------	---

지급기간	육아휴직 급여	▶ 자녀 1명당 1년 ▶ 한 자녀에 대하여 부, 모 각각 1년
	육아기 단축급여	▶ 자녀 1명당 1년(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시 최대 2년) ▶ 한 자녀에 대하여 부, 모 각각 1년(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시 최대 2년)

지원금액	육아휴직 급여	▶ 통상임금 80%(상한액 150만원~하한액 70만원)의 75% 지급 ▶ 사후지급금: 육아휴직급여액 중 25%를 복직 후 6개월 후에 지급								
	육아휴직 급여 특례	▶ <b>3+3 부모육아휴직</b> : 생후 12개월이 될 때 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시 첫3개월 통상임금의 100% 지급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r> <td></td> <td>1개월</td> <td>2개월</td> <td>3개월</td> </tr> <tr> <td>상한액</td> <td>200만원</td> <td>250만원</td> <td>300만원</td> </tr> </table> ▶ <b>아빠특례</b> :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,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(상한액 250만원) 지급 ※'22년 아빠특례 선택시 4~12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50%(상한액120만원) 적용 ▶ <b>한부모</b> : 첫 3개월 통상임금 100%지급(상한액 250만원), 4~12개월 통상임금 80%지급(상한액150만원, 사후지급금 적용)		1개월	2개월	3개월	상한액	200만원	250만원	300만원
		1개월	2개월	3개월						
상한액	200만원	250만원	300만원							
육아기 단축급여	$\begin{matrix} \text{(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)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} \\ \text{개시일을 기준으로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산정한} \\ \text{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(200만원을} \\ \text{상한액으로 하고,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)} \end{matrix} \times \frac{5}{\text{단축 전 소정근로시간}}$ $\begin{matrix} \text{(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)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} \\ \text{개시일을 기준으로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산정한} \\ \text{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} \\ \text{금액(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, 50만원을} \\ \text{하한액으로 한다)} \end{matrix} \times \frac{\text{단축 전 소정근로시간} - \text{단축 후} \\ \text{소정근로시간} - 5}{\text{단축 전 소정근로시간}}$									

감액규정	육아휴직 급여	▶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
	육아기 단축급여	▶ 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을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

제출서류	육아휴직 급여	▶ 통상임금 확인 증명자료 사본1부(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, 근로계약서 등)
	육아기 단축급여	▶ 단축 전·후의 소정근로시간,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 확인 증명자료 사본 1부 ▶ 단축기간동안 지급받은 금품확인자료(임금지급증빙서류, 급여명세서 등)
	공통	▶ 육아휴직·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[서식100호] ▶ 육아휴직·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[서식102호] ▶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
신청	온라인	▶ 고용보험(ei.go.kr) 공인인증서로그인→개인서비스→모성보호→육아휴직급여신청
	서식다운	▶ 고용보험(상동)→자료실(검색: 육아휴직)→육아휴직·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신청서[별지 제 100호 서식]
	오프라인	(우편)구미시 백산로118, 4층 기업지원팀 ▶ 방문 : 구미고용복지+센터 4층 기업지원팀
	문의	(전화)054-440-3358, (팩스)0508-8230-0539